

대륙사슴·곰사육 성공표본 체계적 관리로 「동물자원화」



△중국의 꽃사슴(매화록) 사육장

인구가 3백만명인 중국 동북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성도인 하얼빈에서 일본 고위관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데다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아 우리에게 친숙한 이곳은 세계적인 희귀동물이 많아 동물서식의 보고로 꼽히며 국제수준인 중국의 동물자원산업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하얼빈 남동쪽으로 80여km 떨어진 아칭(阿城)과 평산(平山)에 있는 사슴과 곰 사육장은 중국인의 저력을 보여준다. 동베

이(東北) 임업대학 야생동물자원연구소 소속의 사슴사육장은 약초를 이용한 중약(中藥)뿐 아니라 녹용·녹태·녹용술 등 각종 상품을 생산,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슴연구의 수준도 독보적이다.

4백63ha 규모로 '59년 헤이룽장성의 성장이 수렵을 위해 만들었지만 대륙사슴 등이 귀해지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사슴보호지가 됐다. 총 5백30마리중 대륙 꽃사슴이 4백80마리. 사료장에서는 매일 24시간 불린 콩과 옥수수 1kg, 풀 3kg 정도를 먹인다.

먹이를 줄 때 구역담당 여성사육사가 양철통을 나무로 두드리며 「카이바러(밥먹자)」를 외치면 사슴들이 힘차게 산 아래로 몰려오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25년째 사슴치료를 담당해온 의사 장인명(張仁明·55)씨는 『1월부터 우리에서 사육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5월부터 녹용을 벨 수 있다』고 말했다.

평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교외의 곰사육장에서 동물자원을 산업화한 중국의 힘을 볼 수 있다. 지난 '85년 문을 연 곰사육장은 국영 임업부 산하의 전문사육장으로 아청시 임업국, 하이룽장성 약재국등 5개 기관이 관계해 사육과 번식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85년 3마리로 시작해 현재 65마리를 사육중이며 25마리 정도

는 항상 웅담을 뽑아낸다.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웅담채취 장소는 항상 삼엄한 경비속에 출입이 통제된다. 소젖가루(우유분), 계란, 비스킷 등을 먹고 자란 불곰들이 갈수록 흉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웅담채취등 동물학대에 대한 곰들의 분노를 웅변하는 듯하다.

생물자원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일본은 하이룽장성에서도 불곰과 사슴을 수입키로 교섭을 끝내 선적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 각지에 생태전문가를 파견해 중국내 동식물 실태파악에 나서는등 생물자원 문제에 아직도 둔감한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 1999. 6. 1〉

● 쓴소리

원산지 표시 근본 대책을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울들어서만도 원산지 허위표시로 고발 또는 수사·송치된 건수가 9월 23일 현재 1,813건, 미표시 과태료부과 6,508건, 7억8,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이같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땀질식 처방으로는 수입농산물 둔갑 판매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날이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의 홍수속에서 원산지표시제야말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최선의 대책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뉴라운드 타결 이후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적발된다 해도 약간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이 고작인 형편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선 관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관원이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780명이다. 이들이 단속해야 할 대상은 도·소매업소 16만4,000여 곳을 비롯해 양곡상·정육점·가공업체 등 모두 33만9,000여 업소에 이른다. 최소한 지금의 2배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별칙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건당 3만~100만원에 그치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업소 등의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도 밀수행위 고발 포상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농민신문 1999.10.6〉